

#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93호
----------	---------

제출년월일 2022. 10. .  
제 출 자 황 성 석 의원  
김 현 주 의원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다.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안 제6조)
- 라.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사.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김포시 포상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 ~ 2022. 10.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2. 9. . ~ 2022. 9.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기업지원과

#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김포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

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6.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체육과를 둔다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제7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를 둔다.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9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철도과를 둔다.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둔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를 둔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에 둔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수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 제4장 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0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사업소에 두는 과) ① 맑은물사업소에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둔다.

② 클린도시사업소에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절 읍·면·동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부읍장·부면장)**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2. 1. 1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9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3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50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제3조 (정원채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6.)

② 삭제(2014.4.16.)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김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개정 2000. 4. 18)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91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79 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표 2]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개정 2000. 10. 20)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89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77 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인(집행기관의 정원1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인(집행기관의 정원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인(집행기관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이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 김포시 포상조례

[시행 2020. 7. 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02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숭선수범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포상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김포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동·면장” 을 “읍·면·동장” 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 제10조 중 ‘행정과장’ 을 ‘안전행정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 제10조 중 ‘안전행정과장’ 을 ‘행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